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2019. 5. 27.

보도자료



문의 | 이정미의원실 02-784-4591~3 정승도 보좌관, 임미애비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1호
전화 02-784-4591 | 팩스 02-788-0280

www.leejm.co.kr

Facebook: @justice551 Twitter: @jinbo27

이정미의원, 라돈블랙기업인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 ‘라돈 하자보수 대상으로 담보책임기간 10년’,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 등
공동주택 라돈 관리 명확하게 강화
- 현행 라돈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와 ‘**포스코건설 라돈측정방법
논란**’ 발생 않도록 라돈검출 대상별 측정방법 고려 등 측정기준 강화
 - 학생 건강 위해 **학교 내 정기적 라돈 관리 체계 마련**
 - 정의당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1544-3182)」 운영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월 27일(월) 최근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 논란이 발생한 이후,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며(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였다. <별첨 1> 참고

한편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검출된 신규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입주민들이 요구한 라돈(Rn-222)과 토론(Rn-220)이 동시에 측정되는 공인인증 측정기기 사용조차 6개월 동안 거부하며 라돈(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만을 고집하면서 라

돈 검출 수치를 낮추려 세대주 몰래 라돈저감 코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의 부도 덕함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가 라돈 논란을 더 극대화 시킨 것이다.

참고 : 2019.5.22.(수) 포스코건설 라돈피해 현황 및 라돈석재 회수 촉구 기자회견
<http://www.justice21.org/118111>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은 라돈 건축자재 사용금지 뿐만 아닌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에 라돈을 추가하고 라돈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과 학교내 라돈 관리 등 아이들과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근원적으로 라돈을 차단시키는데 있다.

또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국회의원 추혜선/집행위원장:이혁재)에서 전국의 공동주택 라돈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라돈피해 신고상담센터 (1544-3182)」 운영 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차원이 아닌 공포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미세먼지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문제는 환기를 해라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며 “정부는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라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 1>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관련 주요내용

<별첨 1>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관련 주요내용

	법률안	주요내용	비 고
1	주택법 개정안(사전적)	1.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 : 시공자로 하여금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38조의2 신설) 2. 에너지절약형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시 '라돈'도 포함 : 라돈,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여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함.(제37조 신설)	
2	공동주택관리 법 개정안(사후적)	1. 하자책임대상에 라돈을 포함시키고, 라돈의 하자 보수기간을 10년 기간으로 정함.(제36조 개정) 2. 하자보수기간 동안 라돈저감시공 등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 적용함.(제35조의2 신설)	
3	학교보건법 개정안	1. 학교의 장은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함(제4조의4 신설) 2.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음(제4조의4 신설) 3. 라돈측정대상, 방법, 기간 및 측정도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제4조의4 신설)	
4	실내공기질관 리법 개정안	1. 실내공기질유지기준에 라돈을 추가함.(제5조 개정) 또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에 라돈을 포함하여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VOCs)등 을 추가함.(제11조 개정) 2.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위치를 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함.(제11조7 개정)	